

2024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7. 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업 개요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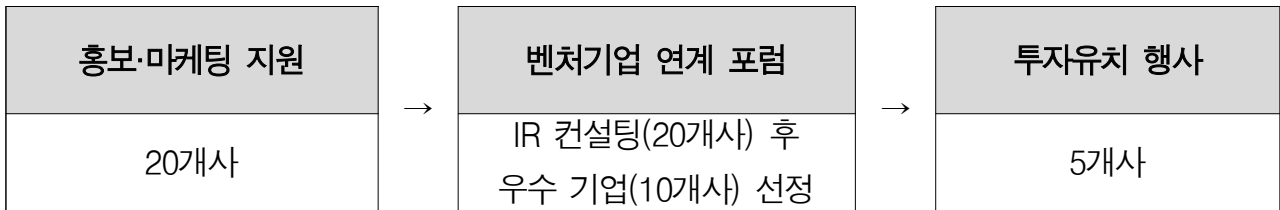
- 홍보·마케팅 지원
- 벤처기업 연계 포럼
- 투자유치 행사 (포럼 참여 우수기업 대상 참여 기회 제공)

☐ 모집 대상 :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스타트업·벤처기업 총 20개사

< 신청 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2. 지원 내용



☐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홍보마케팅 지원

연번	종 목	내 용	비 고
1	박람회 참가	콘텐츠 관련 박람회 참가비용	부가세 미포함 (기업 부담)
2	홍보물 제작	홍보 디자인 및 인쇄물 제작	
3	영상 제작	창업아이템 관련 홍보영상 제작 등	
4	온라인 마케팅	시장인지도 확보를 위한 PR 혹은 매체 광고 지원	

○ 지원규모: 총 20개사, 1개 기업당 최대 3,000천원

☐ 벤처기업 연계 포럼

○ (IR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분야별 투자전문가와 1:1 컨설팅을 통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투자유치 IR 자료 고도화 등의 개별 컨설팅 지원(기업당 2회 내외)

○ (벤처기업 연계 포럼) 컨설팅 진행 후 포럼에 참여하는 현업투자자를 대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스타트업 10개 기업을 추천, 엔젤투자자 및 AC/VC 등을 초청하여 IR 발표를 통한 투자유치기회 제공

○ (투자유치 행사)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포럼 참여 우수 스타트업 5개 기업에게 IR 피칭 기회를 제공하여 팁스 운영사, AC/VC 등의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및 동종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신청 방법 및 세부 일정

□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2024. 7. 9.(화) ~ 7. 29.(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https://bit.ly/gangnamventure>)
- 제출서류

신청서류	결과보고 서류
지원신청서(서식1)	지원금 청구서
사업계획서(서식2)	결과보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3)	확인기관 및 제작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제작업체 발행 견적서 및 타업체 견적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소요비용 이체 내역서 또는 결제 카드 영수증
선정기업 통장 사본	제작 결과물 파일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분

※ 지원금 청구서와 결과보고서는 최종 선정된 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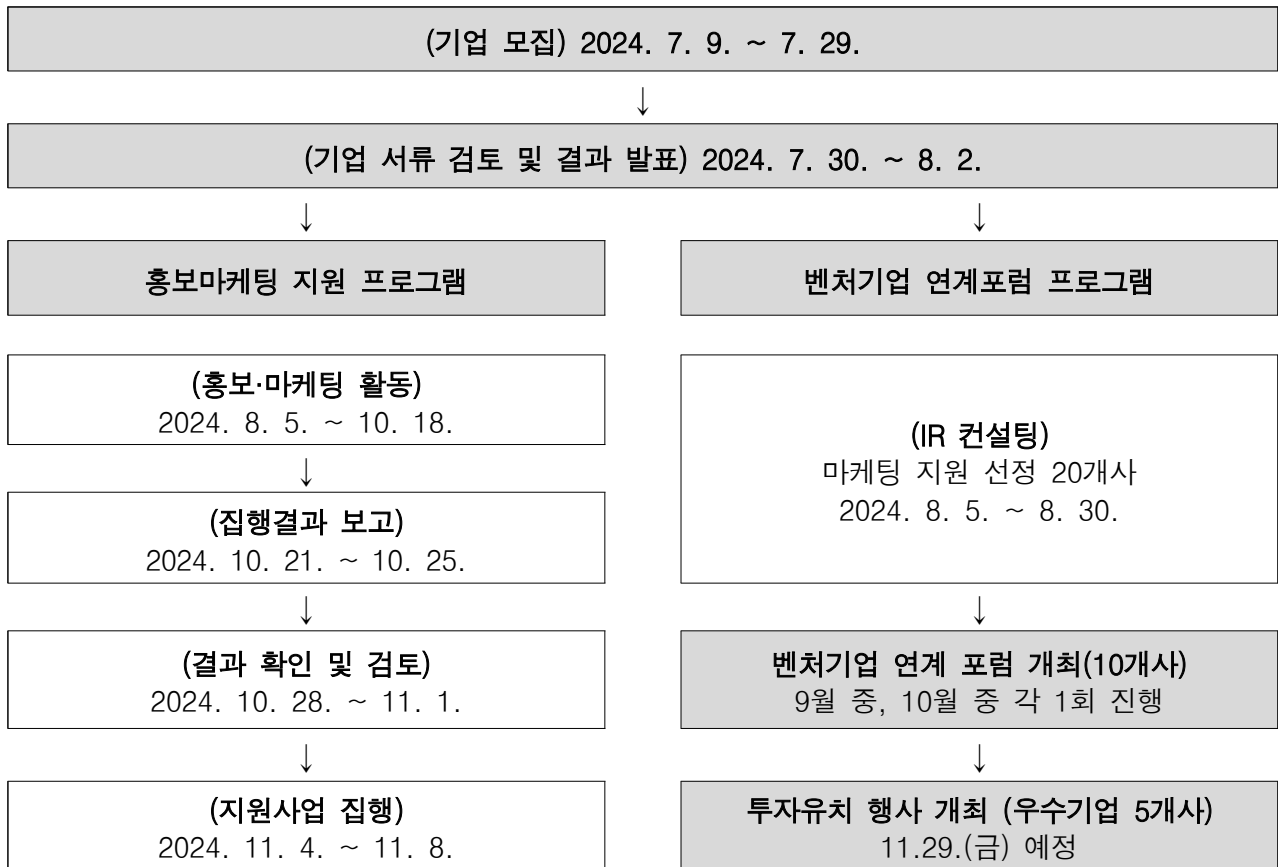
□ 선발 방법

- 서류 평가
 - 심사기준 및 지원자격 결격 여부를 기반으로 적격성 평가 진행

□ 서류심사 기준

항 목	배 점	평 가 내 용
기업역량(20)	10점	· 사업의 의지 및 열정 - 사업화 의지와 열정(5) - 사업목표의 명확성(5)
	10점	· 보유역량 - 창업자 또는 전문성 확보(5) - 팀빌딩 및 팀원의 보유역량(5)
사업모델(30)	15점	· 비즈니스 모델 검증 - 비즈니스 모델의 적합성(8) -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 가능성(7)
	15점	· 시장성 검증 - 유효시장의 검증(8) - 고객확보 방안(7)
사업계획(30)	15점	· 사업화 계획의 구체화 - 사업계획의 구체화(8) - 계획의 실현 가능성(7)
	15점	· 사업화 계획 충실도 - 사업계획의 향후 충실성(15)
기대효과(20)	10점	· 시장 영향력 - 해당분야의 시장 파급효과(10)
	10점	· 성장 가능성 - 향후 성장 가능성(10)
합 계	100점	

□ 세부 일정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사업장소재지가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아닐 경우, 지원 자격 없음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모집 기간 내, 필수 서류 미제출시 지원 자격 박탈
- IR 컨설팅 불참 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불가
- 지출 불가 항목
 - 자산성격의 물품구입비 및 공공요금, 공과금 등
 - 출장여비(교통비, 숙박비 등)
 - 식대 및 회의비, 식음료 구매비
 -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및 증정품(사은품) 구매비
 - 기타 사업과 무관한 지출

※ 최종 선정 여부는 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 문의처

○ 운 영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 전 화 : 02-3440-7353, 이메일 : arjeong@kban.or.kr

【 첨부서식 】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4.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문(붙임 참조)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지 정 일 : 2022. 1. 11.(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시)

○ 지정구역 : 역삼동, 삼성동, 도곡동 (3개구역, 면적 464,697㎡)

※ 자세한 지번은 첨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문 참고

○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 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지정 혜택 : 세제 혜택 및 각종 부담금 면제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혜택 】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 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지방세특별제한법」 58조)

[서식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신청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신청서

- 일반 현황

기업명		지원인원	()인 기업			
기업업력	☐ 초기(3년미만) ☐ 중기(3년~7년 미만) ☐ 후기(7년이상)					
벤처인증여부	☐ 일반기업 ☐ 벤처기업	벤처인증번호				
사업 분야	(Ex. IT, 바이오, SW, 교육, 커머스 등)					
사업장 주소						
서비스(제품)명						
서비스(제품) 개요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업 종	사업자 등록증상 최상위 '업태' 기재			
자본금 (23년도 현재)	백만원	고용(명)	대표자제외, 신청일 기준 현재 고용인원			
대표자 정보						
대 표 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		E-mail				
팀 구성(대표자 제외)						
연번	구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직급
1	공동대표	○○○	00.00.00	000-0000-0000	000@000.00	공동대표
2	직원	○○○				과장

- 3년 이내의 투자유치 현황

투 자 기 관	투자금액(백만원)	지원기간	비고

- 3년 이내의 수상실적

수여기관	수상명	수여일자	비고

- 2년 이내 강남구 주관 벤처·스타트업 대상 지원사항

연도	지원사업명	금액	비고
2023	입주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500만원	

[서식2]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기업 및 제품 개요, 주요 기능 및 특성)
1) 제품(서비스) 개발 현황 및 사업화 목표
2) 기존 제품(서비스) 대비 경쟁 우위성, 차별성

2. 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

1) 예상 고객/판매처, 예상시장의 규모 및 매출 전망

2) 가격 경쟁력

3)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분석(수익전망 및 손익분기 예상시기 등)

4) 사업 파급효과 (사업화 성공에 따른 매출 및 인력채용효과 분석 등)

3. 사업화 추진 계획

1) 창업 후 매출 실적

2) 2024년 매출(수익) 전망

3) 지원사업 파급효과(사업 지원에 따른 매출 및 인력 채용 효과 분석 등)

4. 홍보·마케팅 계획서

1) 제품(서비스) 판매 전략 및 홍보/마케팅 방안

* 현재 기업 및 제품의 홍보·마케팅 현황 등을 명시 후 이를 반영해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
- 선택한 홍보·마케팅 방식 및 전략에 대한 기술 등

2) 홍보/마케팅 기대효과

* 기대효과(비용절감, 매출상승 등의 예상성과를 기술)
- 지원 시 기대할 수 있는 실적, 참여기업의 성장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홍보·마케팅 사용계획

종 목	내 용	제작 기간	예산(안)
계			

※ 종목: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영상제작, 온라인 마케팅 중에서 작성

※ 예산 집행기간: 2024. 8. 5. ~ 10. 18.

※ 예산: 기업당 최대 300만원

※ 작성 시 분량(페이지)의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제시된 문항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 이용 목적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 · 이용 항목

- 필수항목
- － 개인식별정보(성명, 이메일, 휴대폰, 회사 전화번호, 소속, 직위)

☐ 보유 ·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1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024년 일 일

성명 : (서명)